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환매수수료)</p> <p><신설></p> 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청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41조(환매수수료)</p> <p><u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

<p>제43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제43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